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7,349,797	30,520,494
일반회계	814,584,989	24,437,550
특별회계	202,764,808	6,082,944
공기업특별회계	101,726,092	3,051,7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037,460	1,711,1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688,632	1,340,659
기타특별회계	101,038,716	3,031,161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0	2,7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574,723	197,242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8,357,100	2,350,713
교통사업특별회계	11,082,992	332,490
대지보상특별회계	1,500,000	4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40,000	1,200
수질개선특별회계	2,689,901	80,697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545,170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5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